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316
----------	------------

제출년월일 : 2008. 6.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우리시 체육시설 인프라의 최적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스포츠 대회의 집중 유치로 속초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행사 유치자에 대한 성과금지급 제도 마련으로 스포츠·세미나유치 붐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속초시행사유치위원회” 설치 (안 제3조, 제5조)

- 1) “속초시행사유치위원회”를 설치로 행사유치에 전반적인 사항 자문 및 성과금 지급 심의 등을 명시

나. 행사유치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격기준 명시 (안 제4조)

다. 예산등의 지원 (안 제10조)

- 1) 행사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위한 개최경비 등 예산지원명시

라. 지원금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안 제11조)

- 1)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한 취소 및 환수 등 명시

마. 성과금 지급 (안 제13조)

- 1) 행사유치에 공로가 큰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행사유치 성과금지급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08년 추경예산반영 예정

다. 기타

- 1) 입법예고(2008. 4. 17 - 2008. 5.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각종 행사의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행사”라 함은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스포츠경기, 회의, 세미나 등을 총칭한다.
② “행사를 유치하는 자”라 함은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제2장 속초시행사유치위원회

제3조(설치) 행사의 성공적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행사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단체 등 각 분야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의원
3. 행사유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기타 시장이 행사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유치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자문
2. 대규모 행사 유치에 따른 자문

3. 행사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하 “성과금”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심의
4. 행사유치 촉진 계획 및 전략에 관한 심의
5.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사유치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유치촉진 및 지원 등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행사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기타 행사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지원행사의 규모와 예산 등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예산을 지원 받은 기관·단체·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목적외에 사용한 때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때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적용범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성과금 지급 및 범위)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로가 큰 “행사를 유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